

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 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며, 가계통계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3명(6급 1명, 7급 2명)을 감축하면서 존속 기한을 2021년 1월 8일에서 2022년 3월 31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통계청 인력 9명(7급 9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8급 6명, 9급 3명)으로 각각 환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의 관리운영직군(사무 운영직)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9급 1명)으로 전환하며,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본청 9급 22명과 경인지방통계청 8급 3명, 동북지방통계청 8급 6명, 호남지방통계청 8급 8명, 동남지방통계청 8급 3명 및 충청지방통계청 8급 2명을 각각 상호 이체 배정하고, 본청 및 소속기관 5급 복수 직렬에 어촌지도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hy2994@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33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20년 12월 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 1)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 2) 지정명칭 :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仁川 長壽洞 銀杏나무)
Ginkgo Tree of Jangsu-dong, Incheon
-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3-6번지 외
- 4) 수 령 : 800년 이상(추정)
- 5) 규 모 : 1주 / 수고 28.2m, 근원둘레 9.1m, 수관폭 동-서 27.1m, 남-북 31.2m
- 6) 문화재구역 : 12필지 5,386㎡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계			207,787	5,38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2	전	1,157	1,157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48번길 13-21(만수동)	김준수
	63-1	전	622	622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26번길 14	최영재
	63-2	전	311	31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26번길 14	최영재
	63-3	전	589	589		공(남동구)
	63-6	전	359	359		공(남동구)
	63-8	전	382	382		공(남동구)
	63-15	전	167	167		국(국토부)
	73	대	210	2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22-16, 101동 705호(만수동, 금호아파트)	배규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7길 5, 102동 1801호(중계동, 벽산아파트)	문덕순
		73-1	대	3	3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213(월곶동)
	74	대	225	225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6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 106동 702호(06919)	김이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155 LG빌리지 108동 1403호	김경선
					2Harvest circle #208, Lincoln, MA01773 USA	김경순
					2 Scott Ave Jericho, NY11753 USA	캐빈김
					68 Graywood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USA	브라이언호 김
					67-21 212Street, Bayside, NY 11364 USA	김영옥
					429 Cedar Avenue, Paramus, NJ 07652 USA	김영선
					9 Mayo Drive ParkRidge, NJ 07656 USA	신문우
					9 Mayo Drive ParkRidge, NJ 07656 USA	베네딕트김
					9700 Locust Hill Drive Great Falls, VA 22066 USA	데이빗병김
9 Independence Court NewCity NY 10956 USA	플로렌스앤 김					
727-2	하천	203,758	1,357		국(국토부)	
730-3	도로	4	4		국(국토부)	

나. 지정사유

- 1)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는 뿌리부분에서부터 줄기가 다섯 개로 고르게 갈라지면서 높게 솟아올라 있고 나뭇가지가 마치 수양버들처럼 축축 늘어진 생김새가 여느 은행나무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생육상태도 매우 양호함. 또한 오랜세월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마을에 나쁜일이 생기거나 큰 병이 돌면 나무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치성을 드리던 곳으로 현재까지 당제를 지내고 있는 등 자연·학술적·민속적 가치가 큼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남동구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1)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 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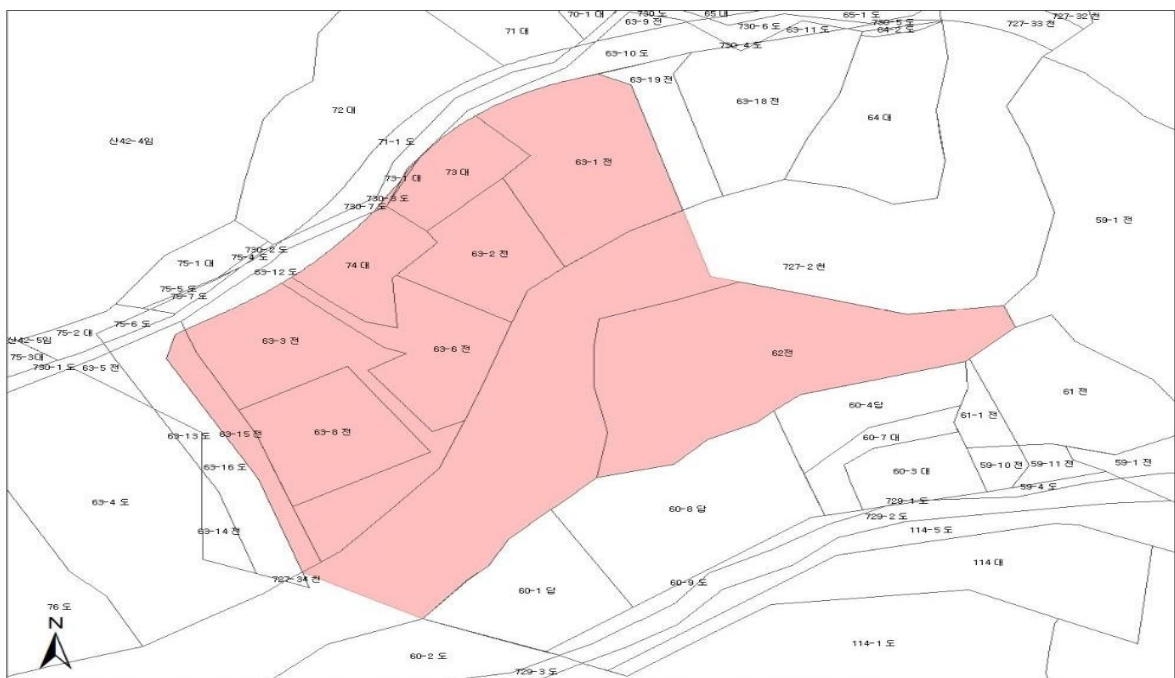
가. 문화재청

-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tn207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2-453-2133 / 팩스 032-453-2139
 - 가) 주소 :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나) 홈페이지 : <http://www.namdong.go.kr> / 전자메일 : cala96@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기상청공고제2020-113호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기상청장

기상사업 등록취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등록취소

2. 당사자

연번	사업자명	기상사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에이원시스템즈(주)	201047-03	411-81-57584
2	(주)더블유엑스72	201048-01	120-87-47561
3	(주)에코션	2011115-01	131-81-89098
4	(주)에어	2015260-01	114-87-21528
5	(주)그린아이씨티	2015267-05	416-81-43159
6	(주)케이바스	2015285-01	109-81-38608
7	엔티테크	2019617-01	149-49-00401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기상사업 등록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2항 -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 12. 21.(월) 까지

나.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담당자: 박세민, 전화: 02-2181-0852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5. 그 밖의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